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이 특별약관은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비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2. 제1항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 (이하 '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에 중복가입되어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중지는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중지 청약을 받고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중지 확인서'와 '중지지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중지지급금>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보장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책임준비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산액을 말합니다.

④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는 중지한 개인실손 보장종목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지한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중지가 성립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중지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계약재개 승낙의 요건, 계약재개 청약 불가 사유 포함),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되는 경우 계약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계약재개 승낙의 요건>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합니다.

①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단체실손 종료일이란 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을 중지·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함

④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1. 보장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자기부담금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계약재개 청약 불가 사유>

회사는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기본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① 기본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합니다.

⑥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합니다.

⑦ 계약자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서 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고 계약중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전 개인실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중지를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지나면 계약중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중지 청약철회 신청 시 이미 지급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철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②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및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계약중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계약중지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